

# 부 산 가 정 법 원

## 판 결

사 건 2014드단1092 이혼등

원 고 정AA

피 고 배BB

변 론 종 결 2015. 4. 7.

판 결 선 고 2015. 5. 12.

##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85. 2.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 입양한 딸 배CC(19\*\*. \*. \*\*.생)이 있었다.

2) 피고는 2006년 겨울경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시비를 걸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3) 피고는 2007년 10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매단 채 주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약 1년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4) 원고는 2008년 7월경 건강 악화로 대동맥 심장판막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의 가족들은 병 문안을 오지 않았다.

5) 피고는 2013년 10월경 휴대폰 매장의 주인과 시비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같은 해 11. 28.경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4075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6) 피고는 위 3)항과 같이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이후부터는 이삿짐센터,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배CC은 아버지인 피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7) 배CC은 2013. 12. 23. 경제적인 문제 등을 비관하여 거주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8) 원고와 피고는 딸 배CC의 자살로 인한 장례식 과정과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서로 마찰을 빚었고 배CC의 사망 원인 및 책임에 관하여도 상대방을 책망하기도 하였다.

9) 원고는 딸 배CC의 장례식을 마친 직후에 가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10) 원고는 2014. 1. 16.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8, 12, 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딸 배CC의 사망 원인 및 책임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을 탓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범죄를 저질러 구금되는 등으로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 피고의 잘못과 딸 배CC의 사망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포용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비난한 쌍방의 잘못 등이 경합되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다소 더 크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재산형성의 경위

1) 피고는 1987년 10월경부터 1997년 6월경까지, 2013년 9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페타이어 수집 및 처리 영업을 하는 DD타이어에서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혼

인기간 중 이삿짐센터 일을 하거나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수입상품을 수입업자 별로 분류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혼인기간 중 딸 배CC의 양육 및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도 보험설계사 일을 하기도 하였고, 2000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할 때까지는 주식회사 EE기업, 주식회사 FF기업, 주식회사 GG기업사 등에 소속되어 상가나 아파트를 청소하는 일을 계속해 왔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8. 6.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는 84년\*\*\*\* 봉고Ⅲ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2. 26. 피고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7, 11, 16, 20, 2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다.

##### 1) 원고의 적극재산

삼성생명 삼성리빙케어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13,986,158원

##### 2) 원고의 소극재산

딸 배CC의 대학등록금 지출과 관련하여 배CC의 사망으로 상속한 해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00만 원

##### 3) 피고의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아파트(시가 1억 8,400만 원)

② 이 사건 화물차(시가 800만 원)

4) 피고의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국민은행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 780만 원

② 딸 배CC의 대학등록금 지출과 관련하여 배CC의 사망으로 상속한 해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00만 원

5)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 190,186,158원

[인정 근거] 갑 제7, 9, 11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다툼이 있는 재산의 분할대상 여부

1) 딸 배CC의 사망보험금 부분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딸 배CC을 피보험자로, 딸 배CC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위 회사의 트리플보장보험, 유니버설종신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배CC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에게 각 75,900,108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보험금은 배CC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수령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와 피고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위 각 보험의 계약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 이상 위 각 보험금은 개별적으로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원고의 친정 식구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부분

원고는, 아버지인 정HH으로부터 3,000만 원, 동생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생 정JJ으로부터 1998. 4. 27. 2,000만 원을, 2008. 7. 14. 100만 원을, 아버지 정HH으로부터 2008. 6. 9. 300만 원을, 같은 해 8. 5. 300만 원을, 2009. 12. 28. 110만 원을, 제부 전KK로부터 2008. 8. 4. 30만 원을, 같은 달 5. 2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돈의 송금시기로부터 이미 장기간이 경과된 점, 원고가 위 각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거나 위 각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등 위 각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위 각 송금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송금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 및 액수를 정할 때에 참작하기로 한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기간이 약 30년인 점, 원고가 혼인기간 중 친정 식구들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보험 가입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 75,900,10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파탄의 경위, 원

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60%, 피고 40%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 2)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분할대상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억 400만 원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114,111,694원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190,186,158원 × 60%, 원 미만은 버림]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 104,125,536원

[= 114,111,694원 - (13,986,158원 - 400만 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억 400만 원

##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곤